

國際特許分類(IPC)의 歷史

(下)

黃 兌 清

<特許廳 審査擔當官>

—承 前—

合同暫定委員會는 유럽評議會 5個國(프랑스, 西獨, 폴란드, 스위스 및 英國 그 後에 시웨덴이 參加)과 WIPO側 5個國(日本, 체코슬로바키아, 蘇聯, 스페인 및 美國 그 後에 브라질 參加)으로 構成되었다. 또 Bureau는 合同暫定委員會의 議長, 副議長, 各作業部會의 議長 및 IIB로 構成되었다. 또한 I~V의 各作業部會의 構成圖 및 主要한 任務는 다음과 같다.

作業部會 I

構成國: 美國(議長), 日本, 프랑스, 西獨, 蘇聯, 英國, IIB

任 務: Section C, D(化學)의 改正

作業部會 II

構成國: 英國(議長), 日本,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스위스, 美國, IIB

任 務: Section G, H(電氣, 物理)의 改正

作業部會 III

構成國: 체코슬로바키아(議長), 日本, 프랑스, 西獨, 英國, 美國, 폴란드, IIB

任 務: Section B(機械)의 改正

作業部會 IV

構成國: 西獨(議長), 日本, 프랑스, 蘇聯, 스위스 (1974년까지), 英國, 美國

任 務: Section A, E, F 其他 技術의 改正

作業部會 V

構成國: 시웨덴(議長), 日本, 英國, 西獨, 폴란드, 蘇聯, 美國,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음서어버), IIB

任 務: 分類賦與의 一致性테스트, 統一의 事項의 審議, Training Seminar의 開催, 그밖의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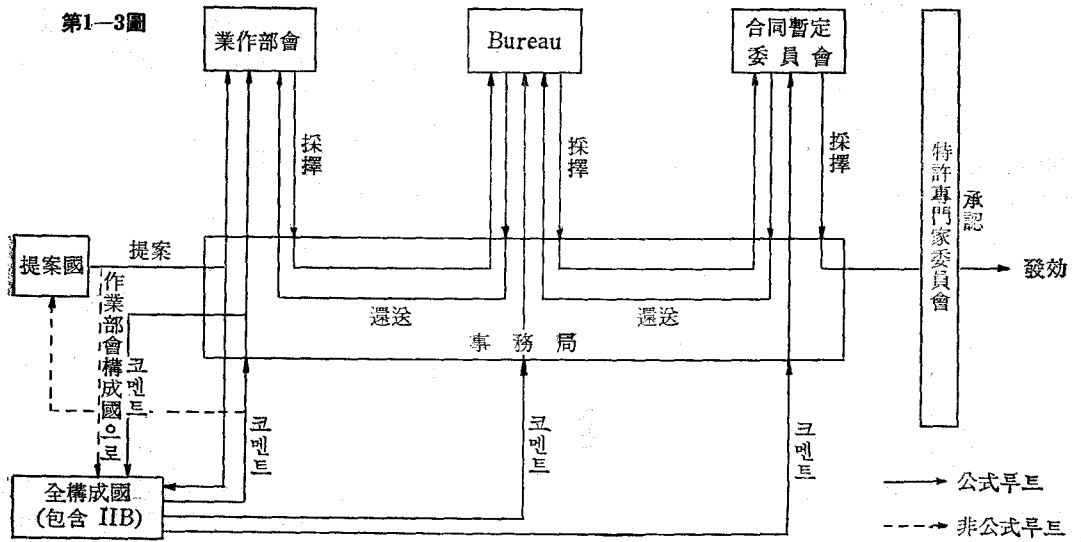
그리고 日本은 作業部會 IV에 1971年 12월부터 加入하고, 作業部會 I~III 및 V에는 1973年 6월부터 加入하여, IPC의 全體의 檢討, 分類賦與의 一致性테스트, 指針의 改正案討議 등에 活躍함과 同時에 日本獨自의 技術分野 및 日本이 나아가고 있는 技術分野를 中心으로 하여 活潑한 改正提案을 하여왔다.

合同暫定委員會, Bureau, 作業部會 I~V 外에도 年 2회쯤의 比率로 改正會議가 열렸다. IPC의 第1改正期(1969年~1973年)에는 특히 Section C(化學關係의 Section은 作業部會 I에 屬함)를 中心하여 大幅의 인 改正이 行해졌다. 改正後 IPC는 A~H의 Section, 116 Class, 614 Sub Class 및 51,530 Group(6,469 Main Group를 包含함)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이 IPC의 第2版이고, IPC 第1版과 같이 그것의 英語版 및 프랑스語版이 폴간·그란피안·복스社에서 發行되었다. 또 合同暫定委員會는 1975年 1월부터 第2版을 使用할 것. 그경우 分類記號앞에 「Int Cl²」의 表示를 할 것 및 Sub-class의 記號를 大文字로 使用할 것을 勸告했다.

7] 改正提案의 審議過程

合同暫定委員會에서 改正提案의 審議過程 및 書類의 흐름은 第1-3圖에 보는 바와 같다.

改正提案은 事務局을 通하여 全構成國에 提示되는 同時에 그 技術分野를 擔當하는 作業部會로 送付되고 그 作業部會의 改正會議에서 審議하였다. 採擇된 提案은 Bureau會議에 回附하여 다음에 合同暫定委員會에서 審議하고 거기서 採擇된 提案은 最終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條約의 最高機關인 特許專門家委員會의 承認을 받아 6個月後에 發効하였다. 또 各作業部會, Bureau, 合同暫定委員會에서 採擇된 事項은 그



때마다 全構成國에 各作業部會, Bureau, 合同暫定委員會의 報告書로서 送付되었다.

8 스트라스부르外交會議

1971年의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스트라스부르外交會議(Strasbourg Diplomatic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71)는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條約의 改正을 目的으로하여 開催되었다.

1970年 6月19日에 調印된 特許協力條約(Patent Cooperation Treaty, 以下 PCT라 함)의 規則 43.3 에는 國際 Search Report에 IPC를 賦與하는 것이 義務化된 뜻을 規定하고 있다. 그래서 PCT體制로의 移行을 考慮할 경우에는 IPC의 重要性이 한층 더 높게 되리라는 것이 豫測되었다.

스트라스부르外交會議는 유럽評議會事務局長 및 WIPO事務局長(Director General)의 兩者에 의하여 召集되고 1971年 3月15일부터 24日까지 스트라스부르의 通稱 「유럽의 집」에서 開催되었다.

파리條約加盟國 38個國이 이 會議에 代表를 보냈다. 그리고 파리條約非加盟國 2個國에서 옵서버가 派遣되었다. 그 外에 4個의 政府機關, 7個의 國際的인 非政府機關이 參加했다.

이 스트라스부르外交會議는 유럽評議會事務局長에 의하여 開會되었다. 議長에는 F. Savignon(프랑스), 副議長에는 P. Cabral de Mello(브라질), 阿部純信(日本), L. Marinete(루우마니아), E. Bonete(토오코), E. Armitage(英國) 및 P. Trezise(美國)가 選

出되었다. 總括報告者(Reporteur General)에는 J. Voyame(WIPO)가 任命되고, 또 事務局長에는 R. Muller(유럽評議會事務局長)이 任命되었다.

1971年 3月 15, 16, 17, 18 및 22日에 F. Savignon이 議長이 되어 總括委員會(The Main Committee)가 열렸다.

한편 이 會議에서 資格審査委員會가 組織되었다. 委員會國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폴란드,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스페인, 튀니지 및 유고슬라비아였다.

이 委員會는 1971年3月16日 및 22日에 M. Naraghi(이란)의 主事로 열렸다. 또 下記한 여러 나라의 代表들로 構成된 法案起草委員會가 만들어졌다.

이 委員會는 R. Von Keller(西獨)의 主事로 1971年 3月19日에 열렸다.

그리고 이 會議에서는 두개의 作業部會가 設置되었다.

作業部會 I은 西獨,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日本, 폴란드, 英國 및 스위스 등의 代表로 構成되고 옵서버의 規則에 대하여 檢討함을 任務로하고 있다.

作業部會 I의 會合은 E. Armitage(英國)의 主事로 1971年 3月17日에 열려 總括委員會에 報告書를 提出했다.

作業部會 II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西獨, 日本, 폴란드, 스페인, 英國 및 美國 등 諸國의 代表로 構成되어 英語, 프랑스語 및 그밖의 言語로 國際特許分類(IPC)의 翻譯 및 出版의 問題에 대한 研究를 委託받았다. 作業部會 II의 會合은 L. Laurelli(아르헨티나)의 主事下에 1971年 3月 17日에 열려 總括委員會에 報

國際特許分類(IPC)活用가이드 (3)

告書を 提出했다.

9) 스트라스부르協定

스트라스부르 外交會議에서 作成된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스트라스부르協定(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은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條約, 商標登錄을 위한 商品 및 서비스의 國際分類에 관한 리이스協定과 아울러 工業意匠의 登錄을 위한 國際分類機構를 設立한 로카르노協定을 參考해서 作成되었다.

1971年 3月 24日에 16個國이 스트라스부르協定에 調印했고 日本은 1971年 9月 13日에 調印했다.

스트라스부르協定은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條約締結國의 3분의 2 및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條約締結國은 아니지만 파리條約加盟國인 나라중의 3個國(다만 그중 적어도 1個國은 批准書 또는 加入書의 寄託日에, 國際事務局이 發行한 最近의 統計에 있어서 特許 또는 發明者證의 出願件數가 年 4萬件 以上일 것을 要함)이 批准書 또는 加入書を 寄託한후 1年을 經過한 時點에 發効되도록 規定했다. 이 條件은 1974年 10月 7日에 充足되고 따라서 스트라스부르協定은 1975年 10月 7日부터 發効했다.

스트라스부르協定은 加盟國에 IPC使用을 義務化시키고 있다(스트라스부르協定第 4條).

또한 스트라스부르協定 加盟國으로 된 專門家委員會 및 總會가 構成되었으며, 專門家委員會에서는 分類의 改正에 대한 權限이 주어지고 總會는 同盟의 維持, 發展에 관한 問題를 다루게 되어 있다(스트라스부르協定 第 5條 및 第 7條).

10) IPC同盟의 發足

1975年 10月 7~9日, 제네바의 파레·데나송에서, 1971年の 스트라스부르協定에 의하여 創設된 IPC同盟(IPC Union)의 第 1回 特別總會가 開催되었다. 이 總會의 構成國은 1974年 10月 7日까지 스트라스부르協定에 관한 批准書 또는 加入書を 寄託하고, 1975年 10月 7日 現在 스트라스부르協定加盟國인 下記의 13個國 및 1975年 9月 30日에 스트라스부르協定에 관한 加入書を 寄託하여 그後 1976年分의 分擔金支拂을 約束하고 總會決議(1975年 10月 7日字)에 의하여 加盟國으로서 다루어지게된 蘇聯이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프랑스, 西獨, 에이러, 이스라엘, 폴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英國 및 美國, 日本은 읍서어버로서 第 1回 特別總會에 出席했다.

IPC同盟의 發足과 함께 IPC의 執行權限은 WIPO만이 갖게 되고 따라서 유럽評議會는 IPC의 執行權限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II 專門家委員會의 作業機構

合同暫定委員會의 作業機構에 의하여 얻어진 經驗을 考慮하면서 IPC同盟의 專門家委員會는 스트라스부르協定の 規則第 5條에 따라서 作業機構를 設置했다.

(1) 運營委員會(Steering Committee)는 合同暫定委員會에 있어서의 Bureau의 일을 引繼받았다. 곧 運營委員會는 IPC同盟의 專門家委員會의 指示에 따라서 作業部會의 일에 대한 管理 및 調整을 行하고, 指針 및 用語에 대한 責任을 진다. 運營委員會는 定期的으로 專門家委員會에 作業進陞狀況을 報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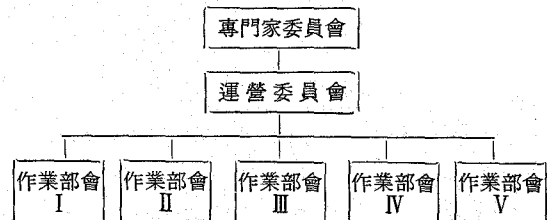
(2) 作業部會 I~V는 合同暫定委員會의 作業部會 I~V의 일을 引繼받았다.

運營委員會는 12個國의 멤버로 構成되었으며 그중 5個國은 作業部會 I~V의 議長이고 다른 7個國은 專門家委員會에 의하여 選出된 나라들이다. IIB의 代表는 投票權이 없는 읍서어버로서 運營委員會에 參加할 수 있다.

運營委員會에는 1個國의 議長과 2個國의 副議長을 두고 이들은 12個國의 멤버중에서 專門家委員會에 의하여 選出되었다.

各各의 作業部會에는 議長과 副議長이 있고 그들은 各各의 作業部會構成國中에서 運營委員會에 의하여 選出되었다. 專門家委員會의 構成은 第 1~4圖에 보는 바와 같다.

第 1-4圖



<完>